

## 관세 행정 및 무역 원활화

### 통관절차의 간소화 (제7.2조)

- 효율적인 물품반출을 통한 양국간 무역원활화를 위해 간소화된 통관절차를 채택토록 규정
  - 간소화된 통관 절차란 가능한 한도에서 상품 도착 후 48시간 내 반출, 상품 도착 전 사전신고, 부두 직통관 및 최종 세액결정전 화물반출 승인 등을 의미

### 특송화물 통관절차 간소화 (제7.7조)

- 특송화물의 통관서류 최소화, 단일 적하목록 제출 허용 등 통관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고, 원칙적으로 통관서류 제출후 4시간 이내에 국내반출 허용
  - ※ 특송화물: DHL, Federal Express 등 특급운송수단을 이용하여 배달되는 상용서류, 샘플 등
- 원칙적으로 미불 200불 이하의 특송화물의 경우 관세 및 세금을 부과하지 않고, 공식적 반입서류도 요구하지 않을 것을 규정

## 위험관리방식의 세관검사 (제7.4조)

- 각 당사국은 전자적이고 자동화된 위험관리시스템을 도입하여, 고위험 화물은 중점 검사하되, 저위험 화물은 반출을 간소히 하도록 규정

## 원산지 등 사전심사결정 (제7.10조)

- 수출자, 생산자, 수입자 요청시, 상품 수입 전에 세관당국을 통하여 다음에 대한 사전심사(advance ruling) 결정서 발급
  - ①품목분류, ②관세평가기준, ③관세환급 관련 사항, ④원산지 상품 여부, ⑤재반입상품 무관세 자격 여부, ⑥원산지 표시, ⑦쿼터 및 TRQ 적용 여부, ⑧기타 양국이 동의하는 사항
- 세관당국은 원칙적으로 사전심사 요청 접수로부터 90일 이내에 판정 결과를 발급하고, 사전심사결정 발급을 거부하는 경우, 그 결정에 관한 사실 및 근거를 적시하여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신속히 통보
  - 신청인은 사전심사결정에 대한 행정적 재심 청구 가능
  - 사전심사 결정이 허위의 정보에 의한 경우, 당국은 사전심사결정을 소급하여 변경하거나 철회 가능하며, 신청인이 허위의 정보를 제공한 경우 민·형사적 조치를 포함한 적절한 조치 가능

## 과세자료 비밀유지 (제7.6조)

- 정보를 제공하는 당사국이 그 정보를 비밀로 지정하는 경우, 다른 쪽 당사국은 그 정보를 비밀로 유지

- 법률집행 또는 사법절차상의 것을 제외하고는 제출자의 동의 없이는 공개할 수 없도록 규정
- 수출입업체 또는 상대국이 제출한 원산지증빙서류 등 기업기밀 서류는 비밀유지를 의무화

### 통관 협력 (제7.5조)

- 통관제도 개선, 관련 법 위반 단속 관련 정보교환, 세관기술지원, 공동훈련프로그램, 세관분석기법의 교환 등 관세행정 전반에 걸친 양국 세관당국간 상호 협력 규정
- 양국 세관당국간 접촉창구(contact point)를 설치하여 신속·안전한 정보교환 및 원활한 협조를 도모
- 당사국의 요청이 있는 경우, 관세 사안에 대한 소위원회 (Subcommittee on customs matters)를 설치하여, 상품의 신속한 반출(제7.2조) 및 통관협력(제7.5조)에 관한 사항 협의 가능 (제2.14조제4항)

### 재심 및 불복청구 (제7.8조)

- 수입자에게 관세결정에 대한 불복청구권을 보장하되, 이와 관련, 수출국의 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소명자료를 제출할 경우 수입자를 거치지 않고, 수입국의 관계당국에 직접 제출할 수 있도록 보장
- ※ 원산지소명자료는 수출자 또는 생산자의 제품원가 등 기업기밀을 포함하고 있어, 거래관계에 있는 수입자에게 제출하기 곤란하기 때문